

사 천 시

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



선 람	기 관 의 장

제730호 2021. 6. 10.(목)

공 고

- 사천시 공고 제738호 자동차 운행정지명령 공고 ----- 1
- 사천시 공고 제770호 양식업 면허 유효기간 연장허가 공고 ----- 2

회 람										
--------	--	--	--	--	--	--	--	--	--	--

발행 : 사천시 / 편집 : 공보감사담당관/ ☎ 831-2215 / FAX 831-6012

사 천 시 공 보

제730호

사천시 공고 제2021 -738호

자동차 운행정지명령 공고

「자동차관리법」 제24조의2(자동차의 운행정지 등)제2항에 따른 소유자의 자동차 운행 정지 요청이 있어 같은 법 제24조의2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운행정지명령 하였음을 공고합니다.

2021. 6. 10.

사 천 시 장

1. 공 고 명 칭 : 자동차 운행정지명령 공고
2. 공 고 기 간 : 2021. 6. 10. ~ 2021. 6. 24.(15일간)
3. 공 고 대 상

신청대상 자동차			운행정지 명령일자	운행정지 사유
등록번호	차명	소유자		
18노5061	K5	허*호	2021.6.1	자동차를 담보로 맡긴 후, 개인사정으로 교정시설에 입소하게 되면서 자동차 점유자와 연락을 할 수 없게 되어 운행정지 신청.

4. 공 고 내 용

- 가. 「자동차관리법」 제24조의2(자동차의 운행정지 등) 1항을 위반한 차량에 대하여 같은 법 제24조의2제2항에 따라 자동차 소유자의 운행정지 요청이 있어 자동차 운행정지명령을 공고하오니, 차량운행자께서는 해당 자동차가 운행정지명령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고 운행정지명령 해제 요청을 하신 후에 자동차를 운행하시기 바랍니다.
- 나. 자동차 사용자*가 아닌 자가 자동차를 운행하였을 때 「자동차관리법」 제81조(벌칙)제7의2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, 운행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운행한 자는 같은 법 제82조(벌칙)제2의2호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짐을 알려드립니다.

* 자동차 사용자 : 자동차 소유자 또는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자동차의 운행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받은 자를 말함.

- 다.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사천시 민원교통과(자동차관리팀 ☎055-831-3395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 끝.

사 천 시 공 보

제730호

사천시 공고 제 2021 - 770호

양식업 면허 유효기간 연장허가 공고

양식업면허 유효기간 연장허가 사항을 「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」 제2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.

□ 양식업 면허 유효기간 연장허가 내역

면허 번호	양식업종류 (양식방법)	어장 위치	면적 (ha)	어업 시기	양식업면허 유효기간	연장허가 기간	허가일자 및 번호	어업권자		비고
								주소	성명	
사천 제28호	어류등양식 (가두리)	서포면 지선	1.9	연중	'16.06.13 ~ '21.06.12	'21.06.13 ~ '25.06.12	'21.06.09. 제2021-1호	사천시 서포면 서포로 272	사천수산업협동조합장 외 3명 (김정경, 김정순, 이아례)	
사천 제29호	어류등양식 (가두리)	서포면 지선	1.9	연중	'16.06.13 ~ '21.06.12	'21.06.13 ~ '26.06.12	'21.06.09. 제2021-2호	사천시 서포면 서포로 272	사천수산업협동조합장 외 2명 (김혜정, 김수봉)	

2021년 6월 10일

사 천 시 장